

1. 전문분야별 기술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평가가 80~100%를 인정하게 되면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도화 되어야 할 건설엔지니어링 발전에 저해된다고 사료됩니다.
2.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 이외 전문분야의 경우 사업분야에 따른 수행업무가 80~100%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로 제한함이 국가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변별력이 없는 기준을 정부에서 입법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해도 되는 평가기준으로 어느 사업자가 훌륭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변별력을 갖추어야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이 따릅니다.
4. 전차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을 반영하므로 비율에 따른 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미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 당해용역이 전차용역 수행정도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5. 이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소비자(발주처)는 더 좋은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스펙을 비교해보고 A/S까지도 고려해서 유명제품을 선택합니다 하물며 10억 이상의 설계를 발주하는데 하향평준화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정도만 갖추면 된다고 정부에서 사업자들에게 더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전문분야의 경우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이 전혀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며 상수도 관로와 도로의 배수설비 등 확연히 다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같은 실적으로 인정하면 부실설계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6. 참여기술인에 대한 기준변경은 특정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통해 지식 및 know-how를 습득한 전문인력의 가치를 하락시켜 기술인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이 퇴행하는 일로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7. 전차용역을 인정하는 것은 당해사업에 대한 현황, 지리적 특성, 용역의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면적, 길이, 금액 등의 단순 수치로만 전차용역을 평가하는 것은 용역특성을 평가하는 일부 항목일 뿐이므로 용역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발주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PQ 평가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임. 모든 회사가 만점이라면 평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9. 실적과 기술자 확보를 위해 노력한 회사와 Paper Company가 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 함.
10. 도로, 철도, 하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사업별로 전차용역 수행정도가 다르므로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적용이 부적합 함.
11. 용역수행평가의 절대평가 점수 기준이 높아 용역수행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부당함.
12. 기술자 실적의 타 분야 교차 인정은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무력화하는 조치임. 전기 기술자가 상하수도 설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13. 회사 전차에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른 인정율을 적용할 경우 배점(1점) 획득이 불가하므로 PQ평가 취지에 어긋남.

14. 회사 전차에 비율에서 금액의 경우 전차 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금액이 당해 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 금액 보다 클 수가 없고, 전차 용역과 당해 용역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인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15.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5억원 미만도 시행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가 사업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17.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최근 10년간 최대 실적요구 건수가 10건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은 책임기술인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으므로(1건/년 수행) 15건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18. 전차용역에서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19.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경우 후속사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인정받아 향후 입찰참여시 가점획득을 기대하면서 작은 용역금액으로 방대한 과업범위와 과업범위 외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강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각종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20. PQ평가는 경력 및 실적이 우수한 기술자, 회사의 실적·신용도·전차수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유리하게 하여 양질의 성과품 및 향후 공사시 안정성 확보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기술자 실적 및 전차수행 등 변별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함